

#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42
----------	------

2016년 12월 20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16년 12월 20일 상정·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공립 각급 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살아있는 에너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추진방식 : 협동조합형
- 시설형태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 건물현황 및 시행자

순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연령)	건물등급	옥상면적 (m <sup>2</sup> )	시행자
1	금산초	본관동	1998 (18년)	A	1,279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건물명	설치면적 (m <sup>2</sup> )	발전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건설비	연간 사용료
금산초	본관동	219.66	34.32	40,000	65,200	1,029

- 사용·수익허가조건

- 사용료 : 금1,029,600원( 30,000원×34.32kW = 1,029,600원)
- 허가기간은 10년(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 사업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단, 사업기간 내 매

각이나 대수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조건

※ 사업종료 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철거비용 예치 없이 기부채납 예정.

- 건물 구조검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 하자보수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같음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동의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42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금천구에 위치한 금산초등학교의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의견

-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기조로서<sup>1)</sup>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및 (사)서울시민햇빛발전소와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산 기반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7일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 만나 <20대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고,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성취할 것을 공동선언하면서 500개 학교의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학교 태양광 보급 활성화 지원 계획」(2013.9)을 수립하여 햇빛발전에 참여한 학교에 대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sup>2)</sup>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의회도 제257회 정례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sup>3)</sup> 높은 임대료로 인한 사업성 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 학교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그

---

1)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2016.1.28.) 추진에 따라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에 '16~'17년 4천억원을 투자하고, 별도 법인(SPC)을 설립하여 연내 1천개 학교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

2)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Tariff)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초기인 2002년도부터 FIT제도를 실시하였으나 FIT제도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정부는 2012년부터 500MW이상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3.7.30 일부개정, 2015.7.31. 시행)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6일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현행 RPS제도에서는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지정이 되지 못하면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이 일정하지 않게 되는 바,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시민햇빛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비용량이 100kW이하이면서 RPS제도의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량 1kWh당 50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부분적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3)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동 개정조례의 시행을 1년 유보하였음.

동안 시의회에서 심의한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되는 것으로, 에너지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나. 등 안건의 제출경위에 대한 검토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유휴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sup>4)</sup>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sup>5)</sup>.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에 제출된 금산초등학교(금천구 시흥동 소재)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은 금산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16학년도 제2회 임시회, 2016.5.18.)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 없이는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철거 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5-0051), 태양광 발전시설은 관련 규정에서 모듈지지대의 고정(지지대와 연결부, 기초지지대의 용접 및 볼트·너트 조임) 및 접지공사를 하여 지중화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국민신문고 안전행정부<2013.7.3> 및 산업통상자원부 답변<2013.7.9>).

5)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공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햇빛발전소 설치의 안전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 금산초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금산초 본관동 1,279<sup>m<sup>2</sup></sup> 중 219.66<sup>m<sup>2</sup></sup>를 활용하여 34.32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동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물안전도 A등급<sup>6)</sup>을 받았는바, 동 건물 옥상에 동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하중의 증가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햇빛발전소 구조 검토 결과<sup>7)</sup>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건물연령)	건물 등급	구조 검토일	옥상면적 ( <sup>m<sup>2</sup></sup> )	결 과
금산초	본관동	1998 (18년)	A	2016.8.8	1,279	구조안정성에 문제없음

- 또한 동 금산초 햇빛발전소는 햇빛발전소 시행자인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발전용량이 34.32kw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최초허가일 이후 10년간<sup>8)</sup> 연간 1백 3만원의 사용료(kw당 30,000원<sup>9)</sup>)를 지급받고, 시행자는 설치비용(65백만원)과 허가기간 종료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안전진단·안전시설 및 하자보수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6) 금산초등학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련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2016.8.8., 제일구조주식회사)

7)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12398(2015.12.11.)

8) 최초 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율 등)

⑦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는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료를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2016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2015.12.16.)

- 사용료 및 대부료

적용기간	사용료 및 대부료(단위: kW·년)
2016년	○ 설비용량 100kW 초과 : 3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3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이를 통해 금산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인 학교 내 옥상을 활용하여 매년 시설사용료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햇빛발전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받고<sup>10)</sup>,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산초 학생들에게는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교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학교햇빛발전소의 유형은 협동조합형, 개인발전사업자형, 한전 SPC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합형의 경우 절차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업자가 납부해야할 사용료는 낮은 반면, 한전SPC형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나 개인사업자형보다 사업운영의 신뢰도가 높고 사용료 면에서 다른 형태보다 KW당 1만원이 높은 4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전SPC형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sup>11)</sup>.

**[표-2] 햇빛발전소 설치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구분	협동조합	민간발전사업자	
		개인발전사업자	한전SPC
햇빛발전소 설비 설치	○	○	○
설치 후 사후 유지.관리	○	○	○
사용료	kw당 3만원	kw당 3만원	kw당 4만원

- ▶ **공통점** : 햇빛발전소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는 설치 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
- ▶ **차이점** : 한전SPC만 사용료 1만원 높음

10) 2017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 지원(협동조합형)-300,000천원

11) 한전은 햇빛새싹발전소(주)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500개 참여 학교에 각각 최대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부지 임대료로 해당 학교에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하며 △학교 전기설비 무상점검 △에너지 컨설팅(ESCO)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 구축 △전기 및 에너지 관련 교육활동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태양광사업의 참여학교 확보를 위한 홍보와 학교 현장조사 및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적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6.12.7.)

- 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완료까지 복잡한 절차와 옥상 누수에 대한 우려 및 지속적인 행정업무 증가로 햇빛발전소 설치에 소극적인 바, 단기간내 실적 위주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햇빛발전소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교측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 햇빛발전소 설치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연도별	2016 (2016.12.현재 실적)	2017	2018	계
학교수(교)	24	220	110	35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1442
----------	------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공립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살아있는 에너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 2.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26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5-256호」 (2015.12.16.)
  - 2016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

### 3. 사업개요

가. 추진방식 : 협동조합형

나. 시설형태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다. 건물현황 및 시행자

순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연령)	건물 등급	옥상면적 (㎡)	시행자
1	금산초	본관동	1998 (18년)	A	1,279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

라.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건물명	설치면적 (㎡)	발전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건설비	연간 사용료
금산초	본관동	219.66	34.32	40,000	65,200	1,029

마. 사용·수익허가 조건

○ 사용료 : 금1,029,600원( 30,000원×34.32kW=1,029,600원)

○ 허가기간은 10년(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 사용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단, 사업기간 내 매각이나 대수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조건

※ 사업종료 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철거비용 예치 없이 기부채납 예정

바. 건물 구조검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사. 하자보수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같음

#### 4.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활용을 통한 에너지 및 환경 교육 효과 제고
- 「원전하나 줄이기」 및 「블랙아웃 방지」 일조
- 햇빛발전소 구조물의 여름철 그늘 효과로 건물의 온도 강하

#### 5. 향후계획

- 사용허가 신청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업자 ↔ 학교)
- 전기사업자(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사업자→서울시)
- 공사 착공 및 준공(사업자)

붙임 1.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2. 관련법령(발췌) 1부.

【붙임1】

금산초등학교 햇빛발전소 배치도면, 현황사진



배치도면



현황사진

※ 설치용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2】

# 관 련 법 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이하 생략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이하 생략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⑦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 2016년 사용료(대부료) 공고 >

적용기간	사용료 및 대부료(단위: kW·년)
2016년	○ 설비용량 100kW 초과 : 3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3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9.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15. 소관재산중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